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8. 4. 24(화) 15:00부터

배포

2018. 4. 23(월)

책임자

사회안전망연구실
강성호 실장(3775-9033)

작성자

강성호 연구위원(3775-9033)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총 8매

보험연구원/한국연금학회,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심포지엄 개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명확히 해야’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연금학회(학회장 권문일)는 4월 24일(화) 오후 3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에서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함
 - (행사 취지) 이번 심포지엄은 100세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제정과 급여수준,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와 연금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적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됨
 - (제1주제: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공적연금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적고, 공적연금간 유기적 통합이 부족하며, 보험료 부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낮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은 기초보장 강화,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제도 간 통합성 제고를, 퇴직연금은 보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제2주제: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사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또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실행 시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였음. 더불어 종신 연금화를 위해 연금 세제혜택은 확대하되 일시금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탄력적 세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 강조)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 제1주제 :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가입/수급 문제, 제도 간 비통합, 재정안정화 등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

-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가입과 수급 측면에서 부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은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35%만 수급하고 있고 그 수급액 또한 월 37만원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며, 기초연금 20만원도 급여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수급대상도 노인의 70%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공적연금의 기본적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 국민연금 수급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30년이 되어서야 65세 이상 인구의 50%가 수급하게 되어 수급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1> 국민연금 수급자 추계

(단위 1,000명)

연도	65세 이상 인구	수급자 수		65세 인구 대비 수급자 수 비율	
		전체	노령연금	전체	노령연금
2016	6,864	2,493	2,144	36.3	31.2
2020	8,084	3,311	2,764	41	34.2
2030	12,691	6,367	5,194	50.2	40.9
2040	16,501	10,746	8,972	65.1	54.4
2050	17,991	14,498	12,310	80.6	68.4

- 퇴직연금은 가입대상 근로자의 50%만 가입되어 가입률이 높지 않고,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이 낮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우려되며, 수급 측면에서 볼 때도 수급자의 97%가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취약함
-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간 비통합,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등의 미성숙한 다원주의적 연금믹스의 성격을 보임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목표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등 제도 간 유기적 통합이 부족하고, 무기여 방식인 기초연금 급여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유인이 떨어

어질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한 편은 아님.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를 합산한 총 보험료 수준은 이미 높은 편이라서 향후 보험료 상향을 추진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표 2> 공적 연금 지출의 장기 전망

	2014-2017년	2020년	2040년
기초연금	39.6조원	17.2조원(기초연금: 0.8%; 국민연금: 2.5% GDP 대비)	99.8조원(기초연금: 1.9%; 국민연금: 6.0% GDP 대비)
OECD 평균	-	9.8% GDP	11.2% (GDP)

공적연금의 기초보장 강화, 급여수준 조정, 그리고 제도 간 통합성을 제고해야

- 공적연금에 대한 기초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 외 보충급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급여수준 상향계획인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실현되는 소득대체율은 약 15% 수준임
 - 여기에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보충급여 제도(소득대체율 5%)를 도입하여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보충급여)로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노인도 2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급여에서 균등부분은 축소하되,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함께 소득지위보장 중심의 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총목표소득대체율을 65% 수준으로 하되, 보험료 상승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40%에서 30%로 10%p*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초보장 부분을 20%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초보장 부분과 성격이 유사한 국민연금 균등부분에서 10%p를 축소한다는 의미임
 -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향후 기초보장보다는 소득지위보장 중심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함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방식은 철폐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의 기초보장 성격을 축소하여 소득비례 연금화하고 기초연금은 보충급여를 포함하여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두 제도 간 상호보완적 발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화를 조건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이때 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제2주제 :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

-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OECD는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필요한 목표소득대체율*을 약 70%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사적 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적은 없음
 - * 퇴직 전 소득 대비 퇴직 후 받는 연금소득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 하며, 적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득대체율을 '목표소득대체율'로 정의함
 -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현실적인 목표소득대체율 수준을 30~35%(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35~40%(혹은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공사적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예,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부처 간 이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인 총리실 산하에 공사연금제도 관련 전담조직(컨트롤타워)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 의무화의 조속한 실행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하되,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Opt-Out* 방식의 자동가입제도(Auto-Enrollment) 도입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반감을 완화하면서 가입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가입은 자동으로 되나 가입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가 가능한 방식
 - 현행 퇴직급여법에 의하면 신규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여 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본의 개인형 DC연금제도(우리나라의 IRP와 유사한 제도)를 참고하여 IRP 가입대상에 전업주부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의무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이 요구됨

- 의무화 계획보다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보조,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칭기여* 방식을 응용할 수 있음

* 조기 도입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납부하는 퇴직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제도내실화를 유도

□ 연금수령 연령 조정, 연금지급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하여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한 연금지급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및 일시금 수령 기준(지급액 등)이 달라짐

**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예, 5년)이 지난 후에 일시금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2015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자동연금수급*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제도화

□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을 유도하되,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가경제 수준을 고려하되 그 수준은 다소 높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예, 고소득자의 공제대상액은 축소) 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lan 등 가입자 특성별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퇴직연금 미도입 시 퇴직급여액 중 운전자금으로 활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퇴직소득공제가 다소 높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공제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재원을 연금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